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 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박완주·한준호·문진석

정춘숙・이정문・오영훈

민홍철 • 변재일 • 김정호

우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.

해당 개정안은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'특례시'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, 행정 기구 및 정원,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·재정 운영의 자율성과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.

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만을 규 정하고 있어,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.

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 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,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,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·재정·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중 "인구 50만 이상 대도시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
- 2. 경기도에 위치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로서 행정수요,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수요 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
- 3.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
- ② 특례시의 인정기준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 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·재정·행정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 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-----다음 각 호의 대도시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 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 및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50만 이상 대도시-----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 <신 설> 1.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2. 경기도에 위치한 인구 50만 <신 설> 이상인 도시로서 행정수요.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 인 대도시 <신 설> 3.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② 특례시의 인정기준 및 인구 <신 설>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 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·재정·행정

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